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 / 전송 (02)731-6562
 처리부서 : 법무담당관(시청본관 3층) / 담당관 박동봉 사무관 구분상 담당 운영권

문서번호 법무 11010- 4090
 시행일자 1998. 10. 9. (년)
 (경유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위급		시	장
보존	년	결재 1998. 10. 02 기회예산실장	
기획예산 실장	진 결		
법무 담당관	박동봉	●법제담당사무관 구분상	
★ 기안	운영권	협조	

제목 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폐지규정 발령 에규제 648 호

1.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- 가. 발령예정일 : '98. 10. 10.(토)
- 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에규 제648호

- 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 2. 발령안 1부. 끝.



서울특별시

(제2안)

수신 : 홍보담당관

제목 : 예규 시보 게재

1.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발령예정일 : '98. 10. 10.(토)
- 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에규 제648호

- 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 2. 발령안 2부. 끝.

법무담당관

(제3안)

수신 : 주택재개발과장

제목 : **예규 발령 통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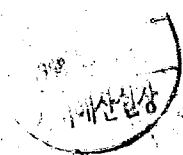
1.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용자처리규정폐지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
무처리규칙 제38조에 외거 따르불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
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8. 10. 10.(토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에규 제648호

첨부 : 발령목록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

예 규 발령 목록

대상 : 1건 (페이지)

연 번	제 명	번 호	주 관 부 서
1	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(페이지)	제648호	주택재개발과
	“ 이 하 여 백 ”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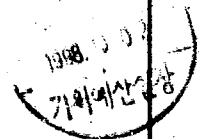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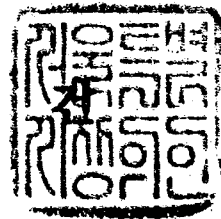
1998. 10. 02
기재예산실장

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용자

처리규정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8년 10월 10일

서울특별시장 고



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폐지규정안

1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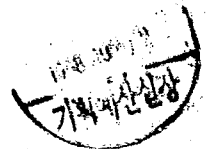
○ 차관재개발사업의 신규 용자가 없어 존치필요가 없으므로 폐지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입시조치법,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

서울특별시예규 제 호

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3707-8231-2 / 전송(02)3707-8249
 처리부서:주택재개발과(서소문동 서소문별관 2동203호) 담당:박형태

문서번호 주재58531-403

시행일자 1998. 9. 25

수신 법무담당관

참조

선 결	법무담당관 박형태	지 시			
접 일 자	시간	결 재	공 합	3422	한기준
수 번 호	2989				
처 리 과				00/3422	
담 당 자					

제 목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 폐지발령 외퇴

1. 우리시 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을 폐지코자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 폐지(안)을 송부하니 폐지발령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 폐지규정안 1부. 끝.

No 648

주 택 재 개 발 과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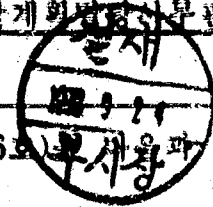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3707-8231-2 / 전송(02)3707-8249
 처리부서:주택재개발과(서소문별관 2동203호)과장:배경동 담당사부관:진희용 담당:박형태

문서번호 주재 58531-
 시행일자 1998. 9
 (경유) 제1안
 수신 내부절재

취급		시 장
보존		김홍재
행정 2 부시장	전 설	
주택국 장	[인]	
주택재개발과장	[인]	
기안	[인]	

법무담당관심사필
 재개발계획변경위원관리서



제목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용자처리규정 폐지

1. 우리시 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의 처리규정(예규 제346호)을 폐지하고자 합니다.

가. 규정현황

- 명칭 :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용자처리규정
- 제정 : 1977. 6. 1 예규 제346호
- 개정 : 1978. 5. 30 예규 제373호

나. 내용 :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('73. 3. 6 제정, '81.12.31 폐지) 제2조 및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('88. 5. 7 폐지, '90. 8.10 자치구 준칙제정)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하는 주택개량을 위한 차관재개발사업(옥수1, 옥수2, 옥수3, 상계1, 상계2, 상계3, 마천1, 마천2, 마천3)구역내 주민의 토지매입자금, 주택개량(개축)자금, 주택매입자금의 용자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다. 폐지사유 : 미국 뉴욕연방주택은행으로부터 500만\$ 차관을 도입하여 차관재개발구역(9개 구역)의 토지매입자금 등을 지원 및 상환을 위하여 동 규정을 제정하였으나,

- '98. 9현재 용자지원한 9개구역중 상계3구역은 용자지원금을 일시상환하고 사업방법을 변경(자력→합동)하였고, 마천3지구는 용자금 상환을 완료되었으며,
- 잔여 7개구역도 용자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계약약정에 따라 상환하고 있으며,
- 500만\$에 대한 차관상환은 차관계약서에 의해 매년 2회(6. 1, 12. 1)상환하고 있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.

첨부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 폐지규정안 1부. 붙.

서울특별시장

(제2안)

수신 법무담당관

제목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 폐지발령 의뢰

1. 우리시 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을 폐지코자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폐지(안)을 송부하니 폐지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 폐지규정안 1부. 붙.

주택재개발과장

부시장

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용자처리규정 폐지규정안

제안일자	1988. 9. 21	제안번호	2
제안자	이정원	제안처	부시장
제안내용	부시장	제안목적	부시장

1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○ 차관재개발사업의 신규 용자가 없어 존치필요가 없으므로 폐지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,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1988 9 21
부시장

서울특별시예규 제 호

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융자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시장